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담당 부서	시설안전과	배포일시	2020. 2. 19.(수) / 총 2매(본문 2)	
		담 당 자	· 과장 김태곤, 사무관 이용재, 주무관 전미자 · ☎ (044) 201-4594, 3588	
보 도 일 시		2020년 2월 2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'안전조치 의무화'

18일 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개정…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로 국민안전 확보

-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하여도 사용제한·금지, 위험표지판 설치, 기한 내 보수·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,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 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“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”과 소규모 취약 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시설물안전법)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,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\*가 있었다.
  - \* '18.6월 부산-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솟음(非중대한결함)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로 사전에 신축이음 결함을 발견하였으나,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
- 또한,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

계획의 수립 및 보수·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.

□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(소규모 파손 안전관리 강화)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는 사용제한·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, 위험표지판 설치, 기한 내 보수·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(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 '19.8.20)되었고,

-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,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.

○ (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계획)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시설,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.

○ 또한, 지속·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(fms.or.kr)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,

○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

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시설 안전과 이용재 사무관(☎ 044-201-45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